

## 일반논평 20: 제7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의 금지)

1. 본 일반논평은 ‘일반논평 7’ (1982년 제16차 회기)을 반영하여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 이를 대체한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의 목적은 개개인의 존엄성과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제7조에서 금지한 행위들, 즉 공적인 자격에 의한 행동, 공적인 자격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 또는 사적인 자격으로부터 나온 행위 모두를 막론하고, 그러한 행위들로부터 모든 국민을 법적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들을 통해 보호하는 것은 당사국의 의무이다. 제7조의 금지 규정은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고 규정한 동 규약 제10조 1항의 적극적 요구조건에 의해 보완된다.
3. 제7조는 어떠한 제한도 허용하지 않는다. 본 위원회는 동 규약의 제4조에 언급된 것과 같은 공공의 비상사태에서조차도, 제7조의 유예가 허용되지 않으며,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 본 위원회가 주지하듯이, 상급자나 공공 기관의 명령을 포함하여 어떠한 이유도 제7조의 위반에 대한 정당화나 정상참작의 사유로 제시될 수 없다.
4. 제7조에서 다루어지는 개념에 대한 정의는 동 규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본 위원회는 금지 행위의 목록을 만들거나, 또는 상이한 종류의 처벌이나 취급에 대해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한 구분은 적용된 처우의 성질, 목적, 가혹함의 정도에 달려있다.
5. 제7조의 금지사항은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와도 관련한 것이다. 더구나, 본 위원회의 견해로는, 이러한 금지가 범죄에 대한 처벌, 교육 또는 훈계를 목적으로 한 과도한 처벌을 포함하는 신체형(corporal punishment)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7조가 특히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에 있는 아동, 학생, 환자들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다.
6. 본 위원회는 구금 또는 수감 중인 사람을 장시간 독방에 감금하는 것은 제7조에서 금지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일반논평 6 (제16차 회기)에서 본 위원회가 언급했듯이, 동 규약 제6조는 사형제도에 대한 언급에서 이 제도의 폐지가 바람직함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국가가 가장 심각한 범죄 행위에 대해 사형 제도를 적용할 때, 이는 제6조에 따라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7. 제7조에서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가 없는 의학적 혹은 과학적 실험 행위를 명백히 제한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회원국들의 보고서는 이 점에 대해서 거의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동 규정의 준수를 보장할 필요성과 그를 위한 조치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본 위원회는 그러한 실험과 관련하여 유효한 동의를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특히

구금이나 구속 상태의 사람들의 경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의학적 혹은 과학적 실험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8. 본 위원회는 그러한 처우나 처벌을 금지하거나 혹은 그러한 행위를 범죄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제7조를 이행하는데 충분치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당사국들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고문이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취한 입법, 행정, 사법적, 그리고 기타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9. 본 위원회의 견해로는, 당사국이 범죄인 인도, 추방 혹은 강제 송환의 방식으로 개인을 타국가의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 또는 처벌의 위험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당사국은 보고서에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명시해야 한다.

10. 회원국들은 제7조에 의해 금지되는 고문과 처우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에 관해 본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법집행관, 의료진, 경찰 및 보호 또는 체포, 구금, 감금 관련 업무를 하는 이들은 적절한 지도와 훈련을 받아야 한다. 당사국들은 위에서 언급한 이들에게 제공되는 지도와 훈련에 관한 사항 및 제7조의 금지사항이 어떻게 이들이 준수해야 할 운영규칙과 윤리기준의 불가결한 요소를 형성하고 있는가에 대해 본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1. 당사국들은 제7조에서 금지한 행위들로부터 모든 개인이 부여받은 일반적인 보호조치를 제시함과 더불어, 특히 권리를 침해받기 쉬운 사람들의 특별보호를 위한 보장조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체포, 구금, 구속 등의 상태에 있는 이들의 보호와 처우에 관한 제도와 같이, 신문 규칙, 지시, 방법 및 관행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고문과 학대 사건들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피구금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구금자는 구금 장소로 공식 인정된 곳에 구금되고, 구금된 사람의 이름과 구금된 장소뿐만 아니라 구금 담당자의 이름이 친척이나 친구 등 관련자들이 이용할 수 있고 접근가능한 등록부에 기재되도록 규정하는 법조항이 필요하다. 동일하게, 심문 시간과 장소는 심문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기록되어야 하고, 이 정보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를 위해 사용가능해야 한다. 또한 외부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의 구금을 금지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국들은 구금 장소에 고문이나 학대에 쓰일 만한 어떠한 도구도 있어서는 안 되도록 해야 한다. 피구금자에 대한 보호에 있어, 의사나 변호사에 대한 신속하고 정기적인 접근, 그리고 필요할 경우 적절한 감독 하에 가족에게도 이러한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12. 고문이나 기타 금지된 처우를 통해 얻은 진술이나 자백을 사법 절차에서 사용될 수 없도록 법률로써 금지하는 것은 제7조하의 위반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중요하다.

13. 당사국들은 보고서에서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을 보고하고, 처벌에 관해 보고해야 한다. 특히 그러한 행위가 공무원이나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또는 개인에 의한 것일 경우이든지, 그 행위에 적용 가능한 형벌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금지된 행위를 부추기거나 명령하고, 묵인 또는 행함으로써 제7조를 위반한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명령에 대해 복종하기를 거부한 이들이 처벌이나 불리한 대우

를 받아서는 안 된다.

14. 제7조는 동 규약의 제2조 3항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당사국들은 보고서에서 자국의 법 체계가 제7조의 모든 금지 행위들에 대한 즉각적 종결을 효율적으로 보장하는 방법과 함께, 적절한 구제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제7조에서 금지한 학대 행위에 대해 청원할 권리가 국내법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구제조치가 되기 위해, 청원은 관할당국에 의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당사국들은 학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조치, 청원인이 준수해야 할 절차, 청원 건수에 대한 통계, 그리고 청원이 처리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보고서에서 제공해야 한다.

15. 본 위원회는 몇몇 당사국의 경우 고문 행위에 대하여 사면을 단행한 적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면은 고문행위를 조사하고, 자국 관할권 내에서의 고문 행위로부터 자유를 보장하며, 그리고 향후 고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해야하는 국가의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가 금전 보상 및 가능하다면 완전한 재활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조치에 대한 권리를 개인에게서 박탈할 수 없다.